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공 기 업 · 준 정 부 기 관 계 약 사 무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에 대한 조달청 위탁절차와 위탁범위를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의 정상화 유도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위발생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조달청 위탁절차와 위탁범위 명확화(안 제7조)

- (위탁절차) 사업부서의 조달청 위탁률 증대를 위해 조달청 업무범위 협의 절차 마련
 - (사전협의) 조달청이 수행 가능한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 사무가 위탁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사회 의결 전 조달청 협의 의무화
 - (인력지원) 조달청 수행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 조달청이 공공기관에 인력지원 요청 등 전문성 확보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위탁범위) 비위 발생된 사업의 계약부서 사무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업부서의 사무(계약이행, 사후관리등)도 위탁 범위에 포함토록 구체화

나. 조문 정리 및 현행화(안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9조)

- 제7조제2항 : “요구받은”을 “처분을 요구받은”으로 변경
- 제7조의2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로 변경
- 제9조 : “규칙 제8조 각 호”을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로 변경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를 “사무(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사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받은”을 “처분을 요구받은”으로, “60일”을 “90일”로, “말한다)”를 “말한다)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단위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을 “따른 이사회 의결 이전에 위탁사무의 범위·방식·수행절차 등을 조달청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정”을 “조정 및 인력지원 등”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각각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9조 중 “규칙 제8조”를 “규칙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사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u>요구받은</u>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 사무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 ② ----- ----- 처분을 요구받은 -----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 ----- ----- 90일 ----- ----- ----- ----- ----- ----- ----- 말한다)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단위부서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따른 이사회 의결 이전에 위탁사무의 범위·방식·수행절차 등을 조달청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
⑤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⑤ -----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위탁사무 범위의 <u>조정</u> 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u>조정 및 인력지원 등</u> ----- ----- -----.
⑥ ~ ⑧ (생 략)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① (생 략)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수요물자 중 제1항 에 해당하는 제품(품목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 품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 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계 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9조(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 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u>규칙 제8조</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있는 경우) ----- ----- ----- ----- ----- <u>규칙 제8조</u> <u>제1항 각 호</u> ----- ----- -----.
부 칙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사무에 관한 적용례) 제7 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 후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4